

계급환산기준표(제23조제2항 관련)

계급	국가·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	경찰공무원	군인	교육공무원			공공기관 등
				초·중·고등학교 교원	전문대학 교원	4년제대학 교원	
소방령	5급		소령	18~23호봉	13~18호봉	11~16호봉	과장 차장
소방경	6급 (3년 이상)		대위	14~17호봉	11~12호봉	9~10호봉	계장, 대리 (3년 이상)
소방위	6급	경위	중위·소위·준위	11~13호봉	9~10호봉	7~8호봉	계장, 대리
소방장	7급	경사	상사	9~10호봉	8호봉 이하	6호봉 이하	평사원 (3년 이상)
소방교	8급	경장	중사	4~8호봉			평사원
소방사	9급	순경	하사(병)	3호봉 이하			평사원

비고

-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-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,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.
-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- 위 표에서 "공공기관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가목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관